

수의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개설안내

대한수의사회



우리회에서는 임상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같이 보험사에서 수의사가 진료업무 도중 과실로 인한 동물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대행 및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개설하도록 하기위해 2002년부터 보험사들과 협의해 온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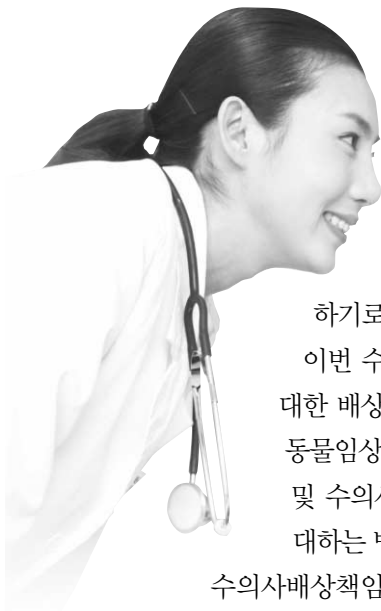
그러나 보험사와의 협의 시 공인된 구체적인 동물의료사고의 통계가 없고 예상 가입인원의 산출이 어려워 보험료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원만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다시 메리츠화재와 수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여러 차례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보험세부내용이 확정되어 지난 5월 11일 (금) 메리츠화재측과 협약식을 갖고 보험을 7월 1일부터 보험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메리츠화재에서 보험 가입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의사배상책임보험은 소동물 임상 회원에 한하여 동물의 폐사나 장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수의사개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산업 동물임상 회원을 위한 보험과 수의사개인이 아닌 동물병원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 및 수의사의 상해나 동물병원의 피해부분(화재, 의료장비 도난파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의사배상책임보험과 관련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의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수의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란?

- 수의사배상책임보험은 수의사가 수행하는 동물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진료대상 동물에 장애를 입히거나 폐사에 이르게 하는 동물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의 배상책임과 분쟁해결을 담보하여 수의사 및 동물병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임
- 동물병원 및 수의사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동물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과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보호자와의 갈등 요소 등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동물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에게는 자신의 환축을 의뢰한 동물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추후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사가 원만하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배상을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음

수의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험 특징

- 동물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함
 - 피보험자인 수의사가 수행하는 애완동물(소동물)의 동물의료행위 중 수의사의 과실이나 태만(errors & omissions)으로 인한 동물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 동물의 시장가격 이외의 소정의 위자료료 지급함
 - 민법상 동물의 지위는 물건으로 분류하지만, 동물의료과실로 인한 보상시 도의적 차원의 위자료료 지급합니다.
(위자료는 동물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의 50% 또는 50만원 중 작은금액을 지급함)
- 동물의료과실의 분쟁해결과정을 보험사에서 대행함
 - 보호자측과 분쟁해결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2차적인 업무부담 및 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사고 발생시 외부 전문손해사정기관에서 사고처리를 대행합니다.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함
 -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 보험가입시 보험증서 외에 동물병원 보험가입 홍보용 부착물 제공 예정

수의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세부(안)

- 보험기간 : 1년 (매년 갱신)
- 보험대상자 : 대한수의사회 회원 중 소동물(애완동물) 임상수의사

- 보험제안사 : 메리츠화재
- 보험개시일 : 2007년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 보험세부내용(가입시 선택안)
 - **실속형) 연간 총 보상한도액 5백만원 / 공제 금액 10만원 / 연간 보험료 389,000원**
 - **고급형) 연간 총 보상한도액 1천만원 / 공제 금액 10만원 / 연간 보험료 439,000원**

▶ 공제금액이란?

-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총액에서 자부담금을 의미함, 예를 들어 총 보상금액이 100만원으로 지급될 경우 공제금액이 10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 90만원을 지급함

▶ 총 보상한도액이란?

- 보험기간(1년) 동안 총 보상되는 한도액으로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되 총 보상한도액 이상은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인원수에 따른 할인율

인원수	2인 이하	3~6인	7~10인	11인 이상
할인율	-	5%	10%	15%

■ 동물의료 사고처리 절차

- 사고처리 일반개요
 - 사고 접수(메리츠화재 전담직원) ▶ 사고 분류 ▶ 처리담당자 배정 ▶ 합의 및 보험금 지급

■ 사고처리 세부사항

- 당사자간 분쟁 또는 고액사고일 경우 : 전문 손해사정회사 처리의뢰
 - 세부절차 : 손해사정처리의뢰(메리츠화재)
 - ▶ 손해사정회사 CLAIM 전문가 병원 방문
 - ▶ 사고내용 청취 및 피해자 방문 ▶ 배상 책임 여부 판단 ▶ 피해자와 합의 중재 ▶ 합의금 결정 및 안내 ▶ 수의사와 피해자간 합의 ▶ 합의금 지급 및 보험금 청구(수의사 선지급후 메리츠화재 청구 또는 메리츠화재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뢰)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당사자간 합의 가능건 또는 소액사고일 경우 : 메리츠화재 자체 처리
 - 세부절차 : 사고내용 확인 ▶ 배상책임 여부 판단 ▶ 합의가능금액 안내 ▶ 수의사와 피해자간 합의 ▶ 합의금지급 및 보험금 청구(수의사 선지급후 메리츠화재 청구 또는 지급의뢰)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수의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 ①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약관(배상청구기준)
- ② 소급담보일자 : 보험개시일
- ③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 대한민국
- ④ 징벌적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 ⑤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⑥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 ⑦ 간접손실 부담보

- ⑧ 원자력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⑨ 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 ⑩ 방어비용 등 제비용은 보상한도액 내 포함
- ⑪ 전쟁 및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⑫ 예방접종 부작용(의약품의 하자, 결합 등)으로 인한 손해 부담보
- ⑬ 성형, 미용 및 치과치료의 결과로 인한 손해 부담보(치료과정 중 직접 손해는 담보함)
- ⑭ 사고발생시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물의 통상적인 시장가격과 1청구당 보상한도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단, 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액을 1청구당 보상한도

액내에서 보상함. 이 경우에도 징벌적인 손해 배상액은 담보하지 아니함.

- ⑮ 전문직업서비스 수행 중 애완동물(소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금에 위자료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통상적인 시장가격의 50%와 50만원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함

수이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및 문의

- 메리츠화재 수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전담센터
: 080-080-3601

